

고 시

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39호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77호(2007.12.27.)로 정비구역 지정
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9-2호(2009.1.23)로 정비구역(정비
계획) 변경 결정된 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국토
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
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.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종로구
청 주택과 및 지적과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09년 7월 10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옥인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

1. 정비구역의 지정

가. 정비구역 지정조서 (변경없음)

지정 구분	정비사업 명 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기정	종로구 옥인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	종로구 옥인동 47-64번지 외 257필지	30,428	-	30,428	

나. 정비계획 수립

1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증(감)	변 경		
합 계		30,428	-	30,428	100.0	
정비기반 시 설	소 계	3,527	-	3,527	11.6	공원경계변경 (면적증감없음)
	도 로	787	-	787	2.6	
	공 원	2,740	-	2,740	9.0	도시자연공원(경계변경) ±51.6㎡(1.4%)
택 지	소 계	26,901	-	26,901	88.4	
	택 지	26,901	-	26,901	88.4	공동주택부지 등

2)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

가)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조서 (변경없음)

결정구분		규 모				기능	사용 형태	연장 (m)	위 치		최 초 결정일	비고
	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기점	종점		
도시 계획 시설	기정	중로	3	-	12 ~16	보조 간선 도로	일반 도로	560 (54)	옥인동41 (옥인동 47-411)	신교동70-3 (옥인동 47-15)	종고제94-30 (94.9.29)	시 고 제2007-477호 (2007.12.27)
	기정	소로	2	-	8 ~10	국지 도로	일반 도로	80	옥인동 47-20	옥인동 47-456		시 고 제2007-477호 (2007.12.27)
	기정	소로	3	-	6	국지 도로	일반 도로	71	옥인동 47-411	옥인동 47-196		시 고 제2007-477호 (2007.12.27)

나)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 조서

결정구분	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증(감)	변 경	
도시계획 시설	변경	인왕산 도시자연 공원	도시 자연 공원	옥인동 47-512 일원	1,782,834.5 (2,004)	-	1,782,834.5 (2,004)	공원경계변경 (면적증감없음) ±51.6㎡
	기정	-	소공원①	신교동 6-30 일원	446	-	446	시 고 제2007-477호 (2007.12.27)
		-	소공원②	옥인동 47-228 일원	290	-	290	시 고 제2007-477호 (2007.12.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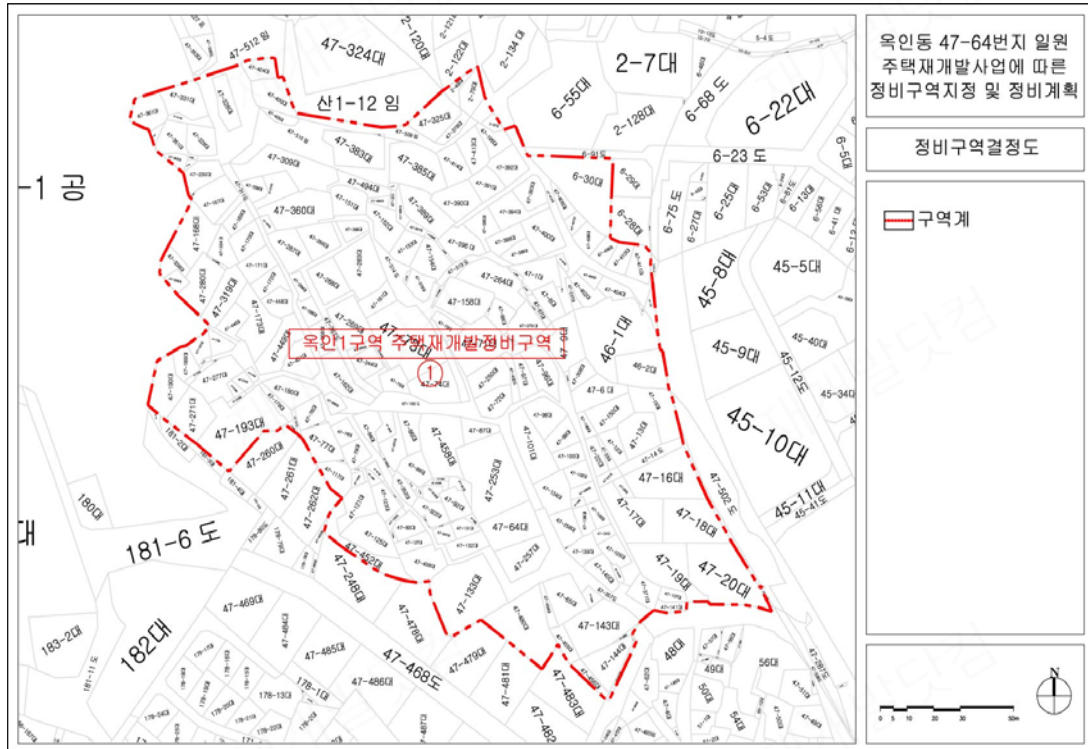
2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가.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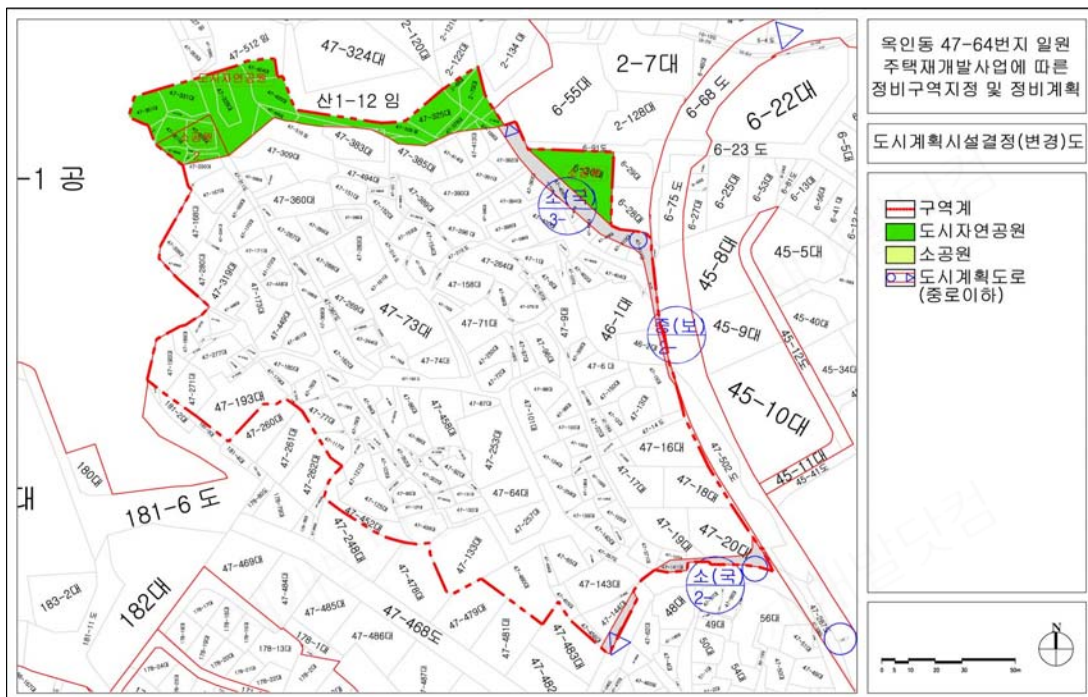
나. 고시문 및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
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옥인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형도면 1부. 끝.

정비구역결정도



도시계획시설계획도



국인동 47-64번지 일원
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
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도

토지이용계획도

□ 구역계
 □ 도시관리계획선
 ■ 공동주택
 ■ 공 원
 ■ 도 로

0 5 10 20 30 40 50m